

Q5. 수석교사, 보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, 교과순회전담교사,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?**A5**

- 수석교사 : 근무성적 평정대상에 제외함
- 보건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, 교과순회전담교사 :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평정함
- 전문상담교사 : 일반·특수·사서·영양·사서교사와는 별도로 평정함

Q6.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, 교과순회전담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 방법은?**A6**

- **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** : 근무성적 확인자(교육장)가 교육지원청 내 관할 교육기관(학교, 교육지원청 등)에 근무하는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함
- **다면평가자 선정** : 근무성적 확인자(교육장)가 교육지원청 내 관할 교육기관(학교, 교육지원청 등)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 중에서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제28조의4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
- **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** : 학교에서 특수·사서·영양·전문상담·실기교사 등에 대하여 별도로 평정하는 것과 같이 교육지원청 내 장학사와 별도로 평정하되, 일반교사들에 적용되는 평정 절차 및 관련 서식은 그대로 적용함
- **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심의** :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"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"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, 교과순회전담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확인점을 심의해야 함

Q6-1. 도교육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 방법은?**A6-1**

- **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** : 근무성적 확인자(교육정책국장)가 도교육청 내 관할 교육기관(학교, 교육지원청, 도교육청 등)에 근무하는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함
- **다면평가자 선정** : 근무성적 확인자(교육정책국장)가 도교육청 내 관할 교육기관(학교, 교육지원청 등)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사 중에서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제28조의4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
- **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** : 학교에서 특수·사서·영양·전문상담·실기교사 등에 대하여 별도로 평정하는 것과 같이 도교육청 내 장학사와 별도로 평정하되, 일반교사들에 적용되는 평정 절차 및 관련 서식은 그대로 적용함
- **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심의** : 도교육청에 설치된 "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"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확인점을 심의해야 함

Q7. 복수교감에 대한 학교장의 평정방법은?**A7**

- 복수교감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 성실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'우'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이 경우 평정대상자들의 평정점([별지제3호서식] ⑨평정점)은 동일하지 않아야 함